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5
----------	-----

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 이후 상위법령 개정 사항 지연 반영 및 위임 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부 주관으로 축조된 자치법규 기본안에 대한 강원도 시군담당자 합동작업 수행 결과를 토대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규정과 중복 규정된 내용 전부 정비

-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 반영
- ▶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표준안 전수 반영

나. 주요 내용

- ▶ 총 9개 조항 및 부칙 2개 조항
- ▶ 제1조(목적), 제3조(부과 징수 사무의 위임),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30만원 미만 세액은 일반우편 송부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19명 이내 구성, 제9조(시행규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평창군공고 제2015-1034(2015.10.8~2015.10.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감사실-11409호, 2015.10.19)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11685호, 2015.10.26)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주민생활지원과-62088호, 2015.10.27)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1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평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자동

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평창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 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평창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전송처리하는 경우도 송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읍·면장 또는 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첨 1]

비용추계 미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3. 미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재무과장 정성문
연락처	(033) 330-2270

[별첨 2]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